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94호 2009. 11. 26.

공 고

제2009-914호	면목 제1구역(면목동 520-1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2
제2009-92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1

인사발령

기술직 7급 공무원 휴직(요양)	13
일반직 9급 공무원 신규임용	13
사회복지 7급 공무원 복직	14
기술직 공무원 징계처분 통보	14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914호

**면목 제1구역(면목동 520-1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1. 우리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26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11. 26 ~ 2009. 12. 28(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3)

면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31-725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3)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 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공고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같습니다.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15,023	증)9,321	24,344	정비구역 확대

3.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신청 내용

가. 제 목 :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19,861.0m²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2,083m², 어린이공원 2,400m²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9.75%이하
- 용적률 : 207.62%이하
- 층 수 : 지하2층, 지상12~15층
- 건립세대 : 455세대, 아파트9개동
 - 60m²이하 : 98세대(22.0%), 85m²이하 : 308세대(69.2%), 85m²초과 : 39세대(8.8%)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면목1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15,023	증)9,321	24,344	정비 구역 확대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동법 제4조(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07호)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시행중인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으로 확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확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24,344	-	24,34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	감)1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662	증)10	20,672	84.9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2,518	증)1,154	3,672	15.1	
3종일반주거지역	1,154	감)1,154	-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 칭	면 적(m ²)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5,023	증) 9,321	24,344	100.0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3,107	증) 1,376	4,483	18.4	
	도 로	2,139	감) 56	2,083	8.5	
	소 공 원	968	감) 968	-	-	
	어린이공원	-	증) 2,400	2,400	9.9	
택 지	택 지(공동주택)	11,916	증) 7,945	19,861	81.6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25 ~4 6	간 선 도 로	일 반 도 로	885 (71)	면목동 1326- 107	면목동 산1-3		서고2006-147 '06.4.27	()은 구역내
변경	대로	3		25~46	"	"	885 (71)	"	"			
기정	대로	3	47	25 ~2 8	"	"	4,5 00 (78)	능동 광로5	면목동 대로3- 42		서고1979-291 '79.6.29	()은 구역내
변경	대로	3	47	25 ~2 8	"	"	4,5 00 (78)	"	"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7	면목동 527-1 18	면목동 528-2			
폐지	소로	2	(1)	8	"	"	182	면목동 1499- 1	면목동 527-8		서고2007-107 '07.4.19	
폐지	소로	2	(2)	8	"	"	64	면목동 1326- 74	면목동 1085- 1		서고2007-107 '07.4.19	
폐지	소로	3	(2)	6	"	"	17	면목동 1086- 58	면목동 1086- 53		서고2007-107 '07.4.19	

□ 공 원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공원	소공원	면목동 520-93 일대	968	감)968	-	
신설	공원	어린이 공원	면목동 520-47 일대	-	증)2,400	2,400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시설면적(m ²)			법정설치 면적(m ²)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관리사무소	택지	73.2	감) 23.2	50	29.75	
신설	노인정	"	150	감) 70	80	69.5	
폐지	주민운동시설	"	535.7	감) 535.7	-	-	
신설	주민공동시설	"	-	증) 70	70	64.5	
신설	보육시설	"	-	증) 100	100	85.8	
신설	어린이놀이터	"	600	증) 120	720	645	
신설	휴게시설	"	-	증) 1개소	1개소	1개소이상	
신설	문고	"	-	증) 40	40	33이상	
신설	근린생활시설	"	350	증) 2,300	2,650	2,670이하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023	택지	11,916	중랑구 면목동 520-19 일대	65	-	-	-	65	
변경		24,344	택지	19,861	"	123				123	

□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면목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5,023	택지	11,916	면목동 520-19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40,245.62	25% 이하	기준용적률 : 150.3% 상한용적률 : 196.2%	평균층수 : 11층이하 (10.7층) 최고층수 : 12층이하 최고높이 : 36M
변경		24,344	택지	19,861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80,000 이하	30% 이하	207.62%이하 (건축계획 : 249%)	평균층수 : 13.6층이하 최고층수 : 15층이하 높이 : 55m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주택의 최대규모(전용면적) : 84.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2.53%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세대수 : 445세대(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이하 : 98세대 (22.0%) 전용면적 60~85㎡ : 308세대 (69.2%) 전용면적 85㎡초과 : 39세대 (8.8%)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연면적에 대한 비율 : 87.36%(전용면적 기준) 재건축 소형주택 : 52세대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서측단독주택지변 대지경계선부터 6m 건축한계선 지정 면목약수터공원 및 그 외 도로 경계선부터 3m 건축한계선 지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3류 및 대로3-47호선(용마산길)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기정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4항, 건축물 층수 운용기준 보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평균층수 13층이하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8층이하 적용 ⇒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가중 평균한 층수 적용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토양유지 및 어린이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에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사.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 계획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면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263세대 계획 : 445세대 (증) 182세대	해당사항 없음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4,344	-	24,344	
1	-	19,861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19,861	택지
2		2,400	면목동 520-47번지 일대	2,400	어린이공원
3		2,083	-	2,083	도로

자.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연면적)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	-	52세대	59.97㎡	4,264㎡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1 월 26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 법 예 고

1. 제정이유

- 최근 잦은 기후변화와 재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하여,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 자율방재단의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과 유사시 초기 수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조직구성 (안 제4조)

-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 ② 방재단의 단원은 총 300명 이하로 하되, 각 동별 방재단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으로 하며, 각 단체단원의 구성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하고, 동별 방재단과 단체단원의 대표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부대표,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

나. 임원의 임기.(안 제5조)

-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②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임무.(안 제7조)

-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에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함.

라. 운영 및 지원사항.(안 제9조)

-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② 방재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중랑구 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음.
- ③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중랑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치수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신내동 662번지)

(중랑구청 치수방재과 전화 : 490-3415~20, FAX : 490-3654)

인사발령

기술직 7급 공무원 휴직(요양)

2009. 11. 23.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이윤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방간호 주사보

일반직 9급 공무원 신규임용

2009. 11. 23.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정예진	지방세무서기보시보에 임함 재정경제국 세무1과 근무를 명함	(신규)
2	최보리	지방세무서기보시보에 임함 재정경제국 세무2과 근무를 명함	(신규)
3	최성현	지방화공서기보시보에 임함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근무를 명함	(신규)

사회복지 7급 공무원 복직

2009. 11. 24.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선경	복직을명함	행정국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기술직 공무원 징계처분 통보

2009. 11. 25.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안우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문) 경고함 (중랑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지방시설 주사 (토목)
2	조동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문) 경고함 (중랑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지방시설 서기보 (토목)